

# 漁港消息

발행경리 孫井植  
편집인 金在克

特殊法人 韓國漁港協會  
서울특별시강남구역삼동705-9

TEL. 568-6651~2  
568-5595~6  
FAX. 568-6653

月刊: 비매품

등록번호: 라3459  
등록일: 1988년 2월 19일

會訓  
● ● ●  
創奉誠  
意仕實

活力있고  
快適한  
漁港漁村  
建設

## '96漁港建設事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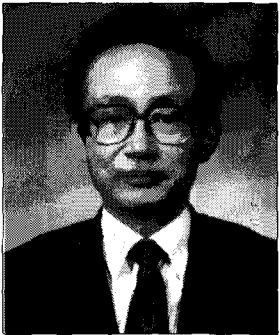
# 早期發注·착공기로 施工 감리 監督 강화

## 豫算 확정 : 사업 서둘러

## 堅實施工에 最善 可能限 집중投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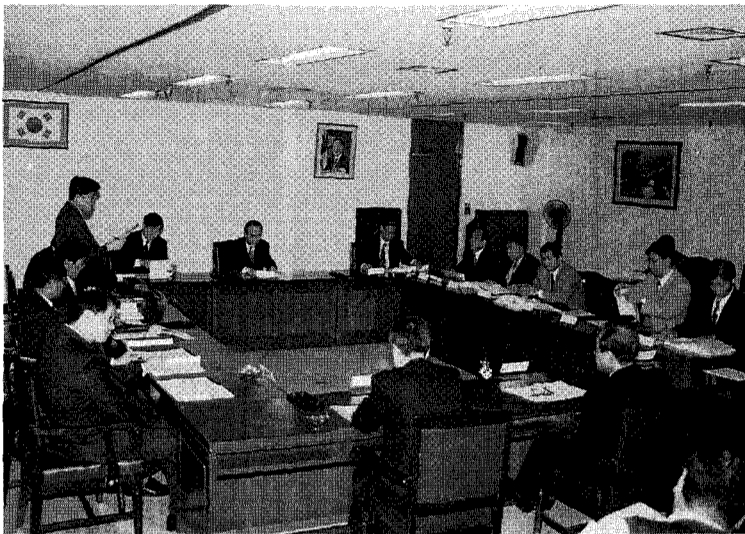
내년도 어항건설예산이 1천6백83억7천8백만 원으로 확정됐다. 12월 2일 정기국회에

서 확정된 '96년도 어항건설예산은 올해보다 10.1% 증가한 1,683,780억 원이다. 1,683,780억 원 중 1,127,989억 원이 어항건설에 투입된다. 이는 '95년 예산 대비 13.3%가 증가한 것이다. 어항건설예산은 '95년 대비 13.3%가 증가한 1,683,780억 원이다. 이는 '95년 예산 대비 13.3%가 증가한 것이다.



## 第13代 田允喆 수산청장

정부는 12월 23일 차관 개편인사에서 전우철 수산청장(66)을 수산청장의 임명했다. 전우철 수산청장은 1966년 행정고시에 합격한 후 법제처와 경계기획원의 요직을 두루 거쳤다. 특히 자연환경 정책개발위원과 재정경제위원에서 독립한 후 차관회의에 배석, 각종 정책개발위원회의를 주관해 왔다. 그는 수산청장으로서 1년 1달을 앞두고 있다. 1년 1달을 앞두고 있다.



특히 한국어항협회와 대한보조금 95년 1억8천만 원에서 '96년도에 9억5천3백만 원으로 대폭 늘어났다. 수산청의 따르면 WT O출범으로 인한 무한정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 어항건설예산은 12월 4일 수산청회의에서 어항구조물표준설계기준서 연구사업 중반보고회를 개최했다.

## 거진·임원·죽변·강구·김포 등 1종 어항이로 轉換

수산청의 따르면 이들 어항은 해안면적에서 지정관리하는 어항이지만 어항의 지대적용을 하는 어항으로 수산청에서 지정관리하도록 전환, 수산청의 발전과 지역민들의 편의를 도모 하고하는 한편, 대·포항(포항) 어항의 생명과 재산보호 하고 소득증대에 기여하며 지역사회의 발전을 도모 해나가기로 했다.

이러한 조정을 고시 하는 지난 71년 제3종 어항으로 지정할 당시에는 도서에 위치하여 어항지원기, 어항개발 예산의 긴급대피 등이 목적이었다. 그동안 어항개발 예산 등 예산이 변화됨으로써 현실에 부합키 위해 제1종 어항으로 조정되는 것이다.

수산청은 지난 4월 15일 새로 지정된 구조라항(제1종 어항)과 보우항(제3종 어항)에 대한 시설기본계획을 수립키로 했다. 수산청은 최근 이들 어항의 항제, 자연조건, 해저지질상태, 배후지 여건 등 계획 수립에 필요한 기 위해 항만 및 해안선

## 미래지향적 定住圈 감안 水産廳 노동항등 漁港 정비計劃을 수립

제반자료를 조사 분석하여 어항을 미래 지향적이 되고 어항정수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키로 했다. 수산청은 이와 함께 농·수산업체와 어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조사결과 반영된 정비계획안을 검토하여 기

구분	'96예산(A)	'95예산(B)	증감(A-B)	대비(%)
계	168,378	152,884	15,494	10.1
<일반회계>	41,278	32,984	8,294	25.1
제1·3종어항	39,389	30,567	8,822	28.9
시설비	38,477	29,780	8,697	29.2
부대경비	912	787	125	15.9
어항사무소	909	2,222	△1,313	△59.1
기타	980	195	785	402.6
어항협회보조	953	180	773	429.4
경상경비등	27	15	12	80.0
<농특회계>	127,100	119,900	7,200	6.0
제1·3종어항	88,600	82,400	6,200	7.5
시설비	86,060	79,500	6,560	8.3
부대경비	2,540	2,900	△360	△12.4
제2종어항	38,500	37,500	1,000	2.7
제1·3종어항	127,989	112,967	15,022	13.3

새로 13곳 港灣建設사업  
港灣廳 釜山港부두 循環道路등  
해운항만청은 부산항 부두수출로 건설되는 13건의 어항 건설사업에 내년부터 신규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해운항만청의 부산항 부두수출로 건설되는 13건의 어항 건설사업에 내년부터 신규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보고 있다.

동향, 불산향, 대포항, 지체포항, 현포항 등 5개항의 대책을 수립하고, 5개항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키로 했다. 수산청은 이와 함께 농·수산업체와 어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조사결과 반영된 정비계획안을 검토하여 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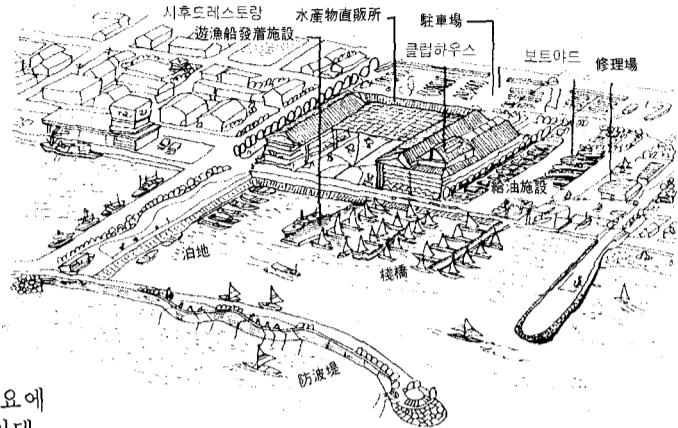


어·항·교·실

# 漁港計劃樹立의要領

[74]

## 피셔리의計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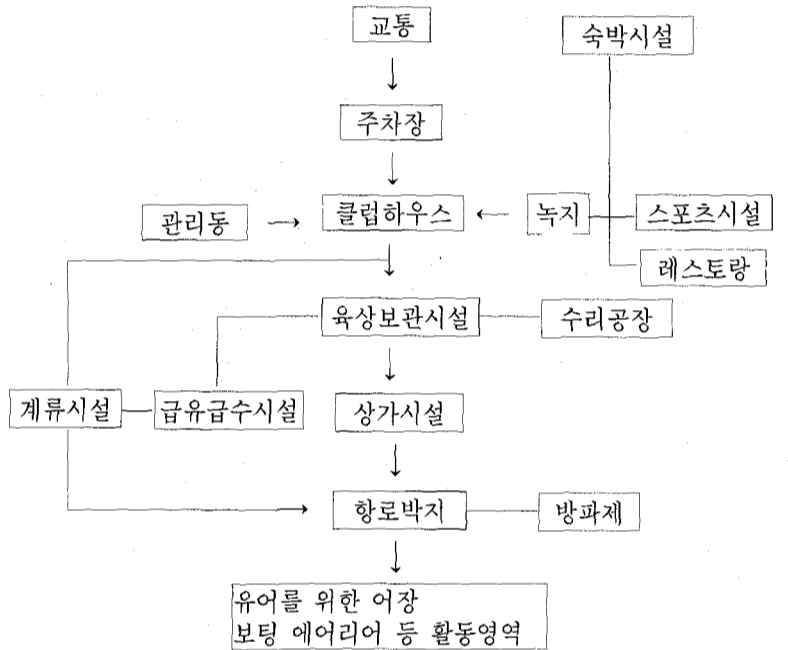


〈그림1〉 피셔리의 개념도

피셔리는 상시설을 필요에 따라 짜맞추어서 정비하는 것인데, 기본적인 구성시설과 이용패턴은 〈그림2〉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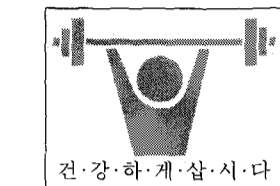
피셔리의 제1의 목적은 어항내의 어선과 유어선 등 수역이용의 적정화, 육역에 있어서의 낚시 등 해양성 레크리에이션 관련 모든 활동과 어업생산 활동의 조화를 도모하고, 어항에 있어서의 어업생산 활동의 원활화를 도모하는데 있으나, 단지 어항에 있어서의 이용조정 뿐만 아니라, 유어선의 집약화에 의한 어장 이용조정, 해양성 레크리에이션의 안전성, 편의성의 향상을 도모하는 동시에 해양성 레크리에이션 관계사업의 도입에 의한 고용의 확대, 도시주민과의 교류 등에 의한 지역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그 고장 어항이 정비, 운영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상징하고 있다.

앞으로는 제3섹터 등에 의한 지역의 활성화에의 요청이나 해양성 레크리에이션의 진전에 대응한 정비의 필요성도 높아지리라 생각된다.



〈그림2〉 피셔리 기본 구성시설과 이용 패턴

사람이 잠이 들기 시작하여 수면의 심도에 따라 1기, 2기, 제4기 수면에 빠지게 되는데 이때는 뇌파가 불규칙적이므로 크고 느리게 되어 깨워도 잘 일어나지 않음 수면기이다.



건강·하·계·삼·시·다

이후 꿈을 꾸고 환각과 맥박 호흡이 증가되면 발기가 되기도 하고 REM (Rapid eye movement) 수면기를 갖게 되는데, 이때 자는 사람을 관찰하면 눈동자가 빠르게 움직이는 것을 볼 수도 있다.

보통 젊은 성인에게 수면 시작부터 30, 45분이 경과되면 첫 REM은 수면 시작후 약 3시간이 경과되면 나타나는데 이때는 약 10분 정도 지속되어

그후 90분 간격으로 REM 수면기가 나타난다. 생후 6개월까지는 하루 평균 18, 20시간의 수면을 취하며 취침전 5세 정도의 아동에서는 10, 12시간, 성인에서는 7, 8시간 정도의 수면을 취하는 노년에서는 하루 서너시간의 수면으로도 정상생활을 하는 경우가 있으며 사람에게 따라 많은 차이가 있다.

이런 나이에 따른 변화나 사람에 따른 수면 차이는 단순히 전체 수면량의 차이가 아니라 각 단계 수면기와 REM 수면기의 양상 및 횟수에 크게 관계된다.

이런 나이에 따른 변화나 사람에 따른 수면 차이는 단순히 전체 수면량의 차이가 아니라 각 단계 수면기와 REM 수면기의 양상 및 횟수에 크게 관계된다.

이런 나이에 따른 변화나 사람에 따른 수면 차이는 단순히 전체 수면량의 차이가 아니라 각 단계 수면기와 REM 수면기의 양상 및 횟수에 크게 관계된다.

비과세소득

### 종합소득세

## 상금 보상금 강연료 복권등의 당첨금등도 과세대상

종합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은 다음과 같다

- 이자소득 : 사채이거나 은행 이자거나 모든 이자는 종합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된다(다만 은행 등 금융기관 등의 이자는 분리과세되고 있음).
- 배당소득 : 법인의 이익배당 이권 법인해산에 따른 잔여재산 배당이건 모두 과세대상이 된다.
- 부동산소득 : 부동산이나 선박, 자동차, 광업권등을 빌려주고 얻은 소득을 말한다.
- 사업소득 : 축산업, 임업, 건설업, 상업, 운송업 기타 사업으로 올린 소득은 전부 포함된다.
- 근로소득 :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봉급(월급·일급불문)과 수당 등 모든 소득이 포함된다.
- 기타소득 :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소득세법에 열거되어 있는 것을 말하는데, 상금·보상금·복권등의 당첨금·강연료·일시적인 문예창작소득 등이 해당된다.

당연히 종합소득세 대상이 될 것이지만 특별한 정책적 이유로 과세를 하지 않는 소득이 있다.

- 이자소득 중 공익신탁의 이익
- 부동산소득 중 논·밭을 남에게 빌려주고 얻는 소득
- 사업소득 중 농가의 부업으로 하는 사업소득(연간 600만원 한도)
- 근로소득 중 군대의 사병이 급여, 국민연금법에 의한 연금, 학자금 등

종합소득세의 산출방법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얻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실질적 소득금액에서 다시 배우자공제, 부양가족공제 등 소득공제액을 뺀 금액인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이것을 간단한 식으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begin{aligned} \text{총수입금액} - \text{필요경비} &= \text{소득금액} \\ \text{소득금액} - \text{소득공제} &= \text{과세표준} \\ \text{과세표준} \times \text{세율} &= \text{산출세액} \end{aligned}$$

필요경비는 수입을 얻기 위하여 들어간 실제 경비를 말한다.

다만,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있어서는 실제로 들어간 경비가 있더라도 이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

근로소득의 경우 필요경비를 산정한다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일정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보고 공제한다.

① 근로소득 공제(1년간)

- 310만원이하→전액
- 310만원초과→310만원+초과금액의 30% 단, 690만원 한도

② 보험료 공제

- 의료보험료→전액
- 인적보험료→연 50만원까지

③ 의료비 공제

- 의료비 지급액이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연 100

- 만원 한도)
- ④ 교육비 공제
- 직계비속과 동거입양자→초·중·고교의 입학금, 수업료, 공납금 전액
- 근로자 본인→초·중·고교·대학의 입학금, 수업료, 공납금 전액
- 동거부양하는 형제자매(2명까지)→초·중·고교의 입학금, 수업료, 공납금 전액
- ⑤ 무주택근로자 공제
-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 무주택근로자→연 100만원
- ⑥ 맞벌이부부 특별공제
- 배우자가 있는 여성근로자→연 54만원

소득공제액은 다음과 같다.

- 기초 공제 72만원
- 배우자 공제 54만원
- 부양가족 공제 1인당 48만원
- 장애인 공제 1인당 54만원
- 경로우대 공제 1인당 48만원
- 부녀자세대주 공제 54만원

종합소득세의 세율은 과세표준이 커질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소위 "초과누진세율"을 채택하고 있다.

종합소득과세표준	세율
400만원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5
400만원초과 800만원이하	20만원+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9
800만원초과 1,600만원이하	56만원+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8
1,600만원초과 3,200만원 이하	200만원+1,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7
3,200만원초과 6,400만원 이하	632만원+3,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6
6,400만원초과	1,784만원+6,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5

생활정보

생활정보